일 반 의 안

거 창 군

--- 목 차 ---

의 안 번 호	건 명	페이지
2020 - 47	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구 내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관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	1

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구 내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

의안 번호 2020 -

제출자 거창군수

1. 제안이유

- 경상남도 '주민참여형 마을공동체 발전소 태양광 조성사업'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를 통하여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정책에 부응하고
-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창출로 고제면, 마리면, 남하면 일반농 산어촌개발사업 지구의 관리·운영을 위한 재원 확충코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추진개요

상호(발전소명)	대표자	설치용량 (kW)	전체(설치)면적 (㎡)	설치장소	비고
고제베짱이사랑방 태양광발전소	오덕희	29.97	4,416(148)	고제면 봉계리 85-1 (주차장 위)	
㈜마리권역사업 운영위원회 태양광발전소	이국재	29.97	183(145)	마리면 말흘리 217-4 (주차장 위)	
㈜참깨비마을권역사업 운영위원회 태양광발전소	유영준	29.97	8,449(142)	남하면 지산로 727-13 (건물 위)	

나. 필요성

-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 재정적 문제로 사후관리 어려운 실정
-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창출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 의 효율적인 사후관리 운영 기대 (연간 수익 7백만원/개소당)

다. 향후 추진계획

○ 2020. 7. : 공유재산 사용·수익 허가(행복농촌과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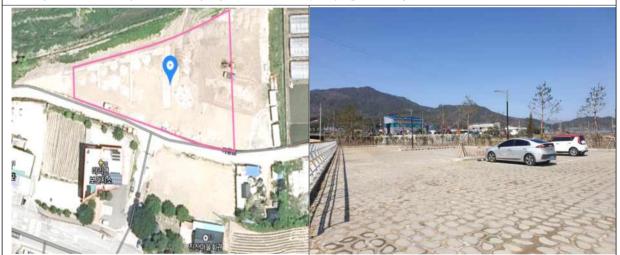
3. 관련법규

-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 제2항
-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촉진법」제26조
- 「거창군 에너지자립도시 조성 조례」제12조

4. 위치도



고제면 : 고제면 봉계리 85-1/ 주차장(토지)



마리면 : 마리면 말흘리 217-2, 말흘리 217-4/주차장(토지)



남하면 지산로 727-13/건물위

관 련 법 령

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

제9조(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) ② 법제13조 단서 및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그 영구시설물의 축조 또는 원상회복 등에 관한 계획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신설 2014. 7. 7.>
[전문개정 2009. 4. 24.]

□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

제26조(국유재산·공유재산의 임대 등)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<u>「국유재산법」</u> 또는 <u>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</u>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. 다만,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<u>조례</u>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□ 거창군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조례

제12조(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) ④ 군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하여 행정재 산 및 일반재산을 임대 할 수 있으며,임대요율은 「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 례」에 따른다.